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505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나505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255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가단25577 판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 중 7,843,23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1,564원 및 그 중 17,156,770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 2행, 제4쪽 위에서 제1~10행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제10~18행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복제로 인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2,500만 원(=500만 원 x 5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추심명령 부분에 관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저1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K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2020타채6742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부당이득반환 판결금채권 중 7,843,23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0. 6.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드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위 부당이득금 채권 중 압류채권액인 7,843,230원에 대한 청구부분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K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 2,500만 원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채권액인 7,843,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일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복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원고의 동의라는 절차적인 문제만 남아있었을 뿐인데,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프로그램 복제권이 있거나 피고의 복제행위로 원고의 침해되는 이익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제3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권양도를 전제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고객등록 변경의 형식으로 원고에게 사용권양도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용권한의 회수 및 변경절차에 협조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도 프로그램의 양도양수는 허용된다고 보인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21, 23, 26, 27,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CD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하드락기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3.경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양수할 당시 하드락기만 건네받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G 등의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였던 점, ③ 소프트웨어사용권증서 제4조에는 '사용자는 보관용 복사본을 만드는 것 이외의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④ 하드락 인수동의서에 의하면 '하드락의 양도양수는 인정하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⑤ 원고가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때서야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그램 양수 사실을 통지한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CD를 이용한 사용행위(내지 보관용 복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제권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는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으로 17,156,770원[=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상당액 25,000,000원(5,000,000원 x 5개) - 압류채권액 7,843,230원]과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상당액 2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이 발생일까지의 지연손해금 2,954,794원¹⁾의 합계인 20,111,564원(= 17,156,770원 + 2,954,794원) 및 그중 17,156,77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인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1.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채권액 7,843,23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17.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김선숙 판사 서동민

1)2,954,794원[=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17,808원 $\{25,000,000 \times 0.05 \times (414/365)\}$ +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9. 12. 13.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일인 2020. 6.
16.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36,986원 $\{25,000,000 \times 0.12 \times (187/365)\}$, 원미만 버림]